대학원학칙 임상치의학대학원 시행세칙

제 1 장 총칙

제 1 조 (목적)이 세칙은 고려대학교 대학원학칙(이하 "학칙"이라 함)이 임상치의학대학원(이하 "본 대학원"이라 함)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교육목표) 본 대학원은 고등 교육법에 규정된 대학 교육의 기본 목적에 따라 특수한 치과 분야에 관한 이론과 그 응용 방법을 교육하고, 연구함으로써 전문적 식견을 획득하게 하여 임상 치의학에 기초하여 국민 구강 보건 향상 및 치의학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개발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한다.

제 2 장 수업연한과 재학년한

제 3 조 (수업연한 및 재학연한) ①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6월(5학기)로 한다.
② 석사학위과정의 재학연한은 5년(10학기)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 3 장 수업

제 4 조 (수업) ① 수업은 야간에 실시하며, 필요에 따라 주간 수업과 공휴일 수업 및 현장실습을 할 수 있다.
② 매학기 수업일수는 15주 이상으로 한다.

제 5 조 (출석) ① 출석이 전체 총수업시간의 2/3에 미달하는 자는 시험성적에 관계없이 해당 교과목의 성적을 F로 한다.
② 출석부는 학사지원부에서 관리한다.

제 6 조 (시험) 각 교과목에 대한 시험은 매학기 말에 실시하며, 필요에 따라 학기중간에 실시하는 시험은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른다.

제 7 조 (불응시원) ① 신병, 병역, 애사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불응시원서에 관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학사지원부에 제출한 후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② 불응시원서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1. 신병 : 종합병원 진단서
2. 병역 : 소집영장 또는 입영확인서 사본
3. 애사 및 기타 : 증빙서류

제 4 장 입학과 학과변경

제 8 조 (입학자격) 본 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칙 제11조 4항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고 소정의 입학 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.
1. 국내의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치의학 학사 학위를 취득 했거나 취득 예정인 자
2. 국내의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학 학사 학위를 취득 했거나 취득 예정인 자
3.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

제 9 조 (재입학제한 및 재입학시기)① 재입학은 전공분야가 제적이전과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.

② 재입학 시기는 매학기 초 30일 이내로 한다.

제 10조 (배점 및 합격기준) ① 합격 기준은 고 득점자 순으로 하며 동점일 경우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.

② 합격기준은 1지망 학과를 우선으로 하며 1지망학과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 2지망, 3지망 순으로 한다.

제 11조 (합격사정) 본 대학원 입학사정은 본 대학원위원회에서 지원자의 시험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한다.

제 12조 (학과 변경) ① 입학 후 학과는 변경 할 수 없다. 단,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1차 학기 이수직후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.

② 학과 변경을 원하는 자는 제2차 학기 개강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1. 학과변경 신청서
2. 학과 주임교수의 승낙서
3. 이수학점 및 성적일람표

제 5 장 수강신청

제 13조 (수강신청) ① 수강신청은 매학기 지정된 수강신청 기일 내에 본교 수강신청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당해 학기에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연구지도는 제2학기부터 매학기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.

제 14조 (수강신청 정정) 이미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기 초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본교 수강신청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.

제 6 장 교육과정과 수료

제 15조 (학점인정) ① 학점은 성적 C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위과정 졸업 및 이수사정에서는 전 교과목의 성적평균이 B 이상이어야 한다.

② 연구과정을 수료한 자가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하였을 경우에는 연구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중 동일한 것에 한하여 그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.

③ 군 위탁생이 군내 교육기관(국방대학원, 국방참모대학, 육군대학 등)에서 이수한 과목 중 본 대학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본 대학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.

④ 학칙 제17조에 의거 전공학과를 변경한 자는 전공학과 변경전에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 중 새로운 전공 학과 주임교수가 지정하는 교과목의 학점만을 인정하고 기타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.

제 16조 (이수과목 및 학점) 학칙 27조에 의한 석사 및 연구 과정에서 이수할 최저 학점과 교과목별 학점은 다음과 같다.

1. 석사과정(28학점)
   - 가. 공통필수 2학점
   - 나. 일반선택 6학점(잔여학점)
   - 다. 전공필수 4학점
   - 라. 전공선택 12학점
   - 마. 연구지도 4학점
2. 연구과정(16학점)

가. 공통필수 2학점
나. 전공과목 6학점(필수 및 선택)
다. 일반선택 8학점(잔여학점)

제 17조 (교과운영) 개설 교과목당 수강인원은 3인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7 장 지도교수, 학위청구, 학위수여

제1절 지도교수

제 18조 (지도교수) ①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자는 제2차 학기초에 지도교수를 신청하여,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2학기 이상 연구 및 논문작성에 관하여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.

제 19조 (지도교수 변경) ① 지도교수의 퇴임, 휴직, 해외여행 및 그 밖의 사유로 1년 이상 학생지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.

②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1. 지도교수 변경서류
2. 학과 주임교수 및 신·구 지도교수의 승인서

제2절 학위청구

제 20조 (학위청구 자격) 학칙 제32조에서 정한 과정별 수료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을 충족한 후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는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.

1.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
2. 지도교수를 배정 받아 논문계획서를 승인을 받은 자
3. 5학기 이상 등록을 하고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
4. 논문 중간발표를 한 자

제 21조 (학위청구논문의 제출 연한) 석사학위청구를 위한 논문 제출은 입학년도로부터 7년을 초과할 수 없다. 단, 군복무 등 기타 본 대학원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 22조 (학위청구논문 계획서) ① 학위 청구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2학기 이상 마친 학생은 논문제출 예상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전에 논문계획서를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논문계획서 제출 시기는 전기는 3월 30일, 후기는 9월 30일까지로 한다.

③ 대학원장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의 연구계획서 심사위원회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고, 심사위원회는 연구계획서 및 연구계획 공개발표 결과를종합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.

④ 연구계획 발표회는 공개로 하고, 4월과 10월중에 갖도록 한다.

제 23조 (논문심사료)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논문심사 전에 소정의 논문심사료를 납입하고 완성된 논문과 함께 학위청구논문 지도카드를 소정기일내에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24조 (학위청구논문 중간발표) ① 논문계획서를 제출한 학생은 3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후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중간발표를 하여야 한다.

② 논문중간발표는 지도교수, 학과 주임교수 및 관련교수의 참석 하에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한다.

③ 논문중간발표를 마친 자에 대하여는 지도교수와 학과 주임교수가 발표회의 결

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25조 (학위청구논문제출 절차 및 시기) ① 석사학위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 제출 자격을 갖추었다는 증빙서류, 논문원고 3부와 함께 논문 심사료를 첨부하여 학사지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제출시기는 전기는 4월 30일, 후기는 10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 26조 (학위청구논문작성 용어) ①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를 혼용할 수 있다.

② 논문이 외국어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.

제3절 자격시험

제 27조 (자격시험의 종류) ①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한다.

② 외국어시험은 영어 과목으로 시행한다.

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.

1. TOEFL 550점 이상 취득한 자.
2. 본 대학교 국제어학원에서 개설한 대학원 외국어시험 인정을 위한 어학강좌에서 48시간 이상 수상하고 B학점 이상 취득한 자.

④ 종합시험은 전공과목에 관하여 최소한 2과목 이상의 범위 안에서 시행하며, 그 과목 및 내용은 해당 시험위원회에서 정한다.

⑤ 종합시험은 과목마다 2인 이상의 위원으로 시행하며, 60점 이상의 성적을 합격점으로 한다.

제 28조 (자격시험 응시자격) ① 외국어시험은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2차학기부터 응시할 수 있다.

② 종합시험은 본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2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12학점 이상을 평균성적 B학점 이상으로 취득하고 외국어시험에 합격한자는 석사학위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

제 29조 (응시절차)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를 지정된 기일 내에 수험료와 함께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30조 (시험시기) 자격시험은 매년 4월과 10월에 실시하며,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 31조 (시험방법 및 출제위원)① 자격시험은 모두 필기고사로 하고 종합시험은 주관식으로 출제한다.

② 자격시험은 본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각 과목당 1인 이상의 출제위원이 출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33조 (출제범위) ① 외국어시험은 영어로 한다.

② 종합시험의 경우 전공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.

제 34조 (합격기준) 자격시험의 합격인정은 학과주임 사정회의에서 결정하며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한다.

제 35조 (재응시)① 외국어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회수에 관계없이 재응시할 수 있다.

②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5학기 수료 후 2년 이내까지 재응시할 수 있다.

제4절 학위수여

제 36조 (논문심사위원회) ① 논문심사위원회는 본교 전임교원 및 해당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각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이 위촉한다.

② 논문심사위원의 수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명이상으로 구성한다.
③ 논문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가 맡으며 심사의 진행을 주재하고 심사의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. 다만, 심사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다른 심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.

제 37조 (심사방법) 논문심사는 제출된 논문내용이 타당하고 적격한지를 1차 심사하고 2차는 구술시험으로 한다.

제 38조 (심사판정) ① 구술시험을 포함한 논문심사의 최종판정은 합격, 불합격으로 한다.
② 합격은 심사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 한다.
③ 불합격된 논문은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수정·보완한 후 6개월 이내에 이를 다시 제출할 수 있다.

제 39조 (학위수여심의) 외국어시험, 종합시험, 논문심사의 결과등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 8 장 포상 및 징계

제 40조 (장학금) ① 입학성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연구비를 보조할 수 있다.
② 장학금 지급이나 연구비 보조결정은 학과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본 대학원 대학원위원회에서 행한다.

제 9 장 공개강좌, 연구생

제 41조 (공개강좌) ① 본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하고 이수자에게는 [별지서식 1]의 이수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.
② 공개강좌의 명칭 또는 교과목 개설기간, 장소 및 수강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개설시마다 대학원장이 이를 정한다.

제 42조 (연구생) ① 본 대학원이 개설하는 특정 교과목 또는 과제에 관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.
② 연구생은 석사학위과정 지원자격과 같으며 본 대학원이 실시하는 전형에 합격한 경우에 입학을 허가한다.

제 43조 (연구기간 및 연구과제) ① 연구생의 연구기간은 1년으로 한다.
② 연구과정의 교과는 교과과정 일람에 의한다.

제 10 장 대학원위원회

제 44조 (대학원위원회의 회의) ① 본 대학원 대학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심의한다.
② 그 밖에 본 대학원 대학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려대학교 위원회 설치 운영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본 시행세칙 시행전에 발생한 사항으로 본 시행세칙 시행 후까지 지속되는 사항은 해당자에게 유리한 규정을 적용한다.

[별지서식 1]

제 호

이 수 증 서

성명 ○ ○ ○

년 월 일생

교육과정 :

위 사람은 본 대학교 임상치의학술대학원이 개설한 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함

년 월 일

고려대학교 임상치의학대학원장 ○○학박사 ○ ○ ○
(직인)

위의 증명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

년 월 일

고려대학교 총 장 ○○학박사 ○ ○ ○ (직인)